

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  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·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
- 또한, 통리반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통리반 조정 : 3개통 증설, 3개반 감축
  - 통·리 : 560개 통리(통 393, 리 167)  
⇒ 563개 통리(통 396, 리 167), (3개통 증설)
  - 반 : 3,897개반 ⇒ 3,894개반(3개반 감축)
- 통리장 정수조정 : 3명 증가(통장)
  - 통장 정수 : 393명 ⇒ 396명(3명 증가)
  - 이장 정수 : 167명 ⇒ 167명(변동 없음)

#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## 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